# 『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시업』지원기관 2차 모집 공고

「2015년도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#### 1. 사업개요

ㅇ 사업명 :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

○ 주 관:보건복지부

이 시 행: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※ [붙임1.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수행 절차] 참조

# 2. 지원규모

-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금액 : **프로젝트별 최대 70백만원**(국고보조금)
  - 간접보조사업비(지원사업비)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, 사업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% 이상 부담

(자기부담금 계상 예: 100백만(간접보조사업비) = 70백만원(국고보조금) + 30백만원(자기부담금)

- ※ 해외진출기관 프로젝트 규모, 특성 등을 고려하여,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최종 지원규모 결정
- ※ 자기부담금은 현금 부담을 원칙으로 함

### 3. 지원대상

- 의료서비스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, 단독 또는 파트너와 공동으로 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, 위탁경영(운영), 의료기술 제휴·전수 또는 의료정보 시스템 등을 수출하여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
  - 건설, 제약, 의료기기, 의료정보시스템(HIS) 등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사업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
    - ※ 2015년도 1차 지원사업 선정 기관도 지원 가능. 단, 旣 선정된 사업 이외 해외진출 프로젝트
    - ※ [붙임2. 사업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기준] 참조

### 4. 선정방법

- 사업계획서 서류심사
- 사업계획서 발표(대면)심사에 의한 선정
  - ※ [붙임3. 수행기관 선정 세부절차] 참조

### 5. 지원내용

- 의료시스템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각 단계별 소요되는 사업추진 소요비용
  - ※ [붙임4. 세부지원 내용] 참조

### 6. 사업수행기간

○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

### 7. 신청기간 / 제출서류 / 접수처

- ㅇ 신청기간
  - 제출서류: 2015년 10월 23일(금) 18:00 접속분 까지 온라인 신청
    - \* www.kohes.or.kr 기업회원 가입하여 신청
  - 사업제안서 사본 10부: **2015년 10월 23일(수) 우편 도착분(**우편소인 10월 23일까지 인정)
  - ※ 우편물 미제출 시, 온라인 신청 불인정

#### ㅇ 제출서류

- ① 제출공문
- ② 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③ 사업계획서(A4 세로형 좌측제본, 총 100page 이내(표지, 간지 포함))

구 분	규 격	제출수량
전자파일	- <b>사업계획서</b> 및 별도 <b>제출서류 일체</b> 의 내용 수록 * 사업계획서 파일 저장명: 기관명_지역(국가)_프로젝트명 * 기타 제출서류 파일 저장명: 기관명_제출서류명	온라인 신청 (www.kohes.or.kr)
사업계획서 (반드시 <b>제본</b> 할것)	- 백색용지 A4사이즈/종(210mm×297mm)으로 작성 ※ 내용은 컬러, 흑백 제한 없음 ※ 제 본: 접착제 제본, 좌측편철, 양면인쇄	<b>10부</b> (우편으로 별도 제출)

※ [첨부파일 2.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서식] 참조

- 서약서 1부
-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(최근 3개월 이내) 1부
  - ※ 국세청 및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**원본 제출 원칙** / 발행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증명서 또는 원본대조필 불인정 / 정부기관이 발행한 대체 증명서 인정(최근 3개월 이내)
- 총 사업 책임자(기관)의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사본 1부
- 총 사업 책임자(기관)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  - \* 제출서류 원본(사업계획서 제외)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발표(대면)심사 대상기관에 한해 발표(대면)심사 당일 제출

#### <컨소시엄 구성시 추가서류>

- 공동수급협정서(공동사업자간 '업무제휴 협약서') 사본 1부
- 총 사업 책임자를 명시한 대표자 선임계 1부

#### ㅇ 접수처

- 제출서류: www.kohes.or.kr 기업회원 가입하여 등록
- 사업계획서 사본 10부: 우편접수(우편소인 10월 23일에 한함)
- ※ 우편 접수처

(363-700)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지원단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담당자 앞

\*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# 8. 문의처

○ 사업 담당자 : 의료해외진출지원단 정치중 연구원

○ 전화문의 : 043-713-8868(8577)

ㅇ 이 메 일 : kohes@khidi.or.kr

### 9.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, 미(未)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
-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수 없음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
-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,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음
-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
  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,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
  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  -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별첨(스캔 첨부, 원본은 발표평가 시 증명)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
## 2015년 10월 5일

# 한국보건산업진흥워장

첨부파일 1. 지원사업비(간접보조사업비)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첨부파일 2.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서식

## 붙임 1

#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수행 절차

### □ 용어정의

- "관리기관"이라 함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관리·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 함
- "신청기관"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, 의료시스템 (서비스) 해외진출 관련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당해 연도 대상사업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"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"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말 함
- "주관기관"이라 함은 관리기관이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사업(프로젝트)을 주관하여 수행하고 지원금을 관리 및 집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 함
- "참여기관"이라 함은 해당 사업(프로젝트)에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 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 함
- "사업수행기관"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하며,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(프로젝트)을 수행함
- "사업 책임자"라 함은 본 사업(프로젝트)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 함
- "간접보조사업"이라 함은 국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 함
- "국고보조금"이라 함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(프로젝트)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(사업비) 중 관리기관이 지원하기로 협약한 금액을 말 함
- "자기부담금"이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이 출연한 금액을 말 함
- "간접보조사업비"이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위하여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을을 합한 금액을 말 함
- "간접보조사업 기간"이라 함은 협약체결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를 말하며 간접보조사업비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간을 말 함

# □ 추진체계 및 역할

○ 본 사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책방향을 수립 및 재원을 확보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, 사업추진 및 관리함



### ○ 기관별 주요역할

구 분	주 요 업 무
보건 복지부	•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리 총괄 • 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승인 • 성과관리 및 결과 확인 등
한국보건산업 진흥원 (관리기관)	<ul> <li>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</li> <li>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</li> <li>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</li> <li>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, 처리</li> <li>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(프로젝트)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</li> <li>사업 수행의 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</li> <li>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</li> <li>차기년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</li> <li>사업실적 및 운영현황 최종보고(복지부)</li> </ul>
평가 위원회	•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심사, 평가 및 자문 • 주관기관 사업 진행 자문
회계법인	• 사업비(프로젝트) 사용실적 감사
수행기관 (주관기관)	•「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」사업(프로젝트) 추진 및 계획 이행 • 추진사업 실적, 진행현황 중간보고 및 최종 사업결과 보고(성과포함) • 국가보조금 지원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

### □ 사업수행 절차

<u>단계</u> ■ 절 차

- ① 신청 및 접수
- 사업 신청
- 공고에서 정한 신청서류 일체 제출

1

- ② 심사·평가 및 선정
- 주관기관 선정
-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및 평가
-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범위 협의 및 조정

1

- ③ 협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
- 협약체결
- 주관기관은 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협약체결
- 선급금 지급
- 관리기관은 협약체결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선급금 70%(국고보조금) 지급

1

- ④ 중간평가 및사업비 조정
- 사업(프로젝트) 추진현황 및 실적검토
-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보고양식(중간실적보고서 등)을 제출하고, 평가위원회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(프로젝트)의 "계속"진행 또는 사업"중단"을 결정함.
- 사업비 조정 및 환수
- 평가위원회는 보고양식(중간실적보고서 등)을 검토하여 필요시 **사업비** 조정을 할수 있으며, 평가결과가 "계속"진행이 경우 조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 계속 진행 또는 사업"중단"인 경우 **사업비 환수**

1

- ⑤ 정산서 제출, 결과평가 및 잔액지급
- 정산서 제출
  -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실시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회계법인에 정산서 제출
- 사업(프로젝트)추진 최종 실적검토 및 검토
-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결과보고양식(결과보고 등)을 제출하고, 평가위원회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(프로젝트)의 "지속지원", "사업완료", "지원금 환수" 여부 평가
- 관리기관은 결과평가 완료후 14일 이내에 잔액 30%(국고보조금) 지급

1

⑥ 사후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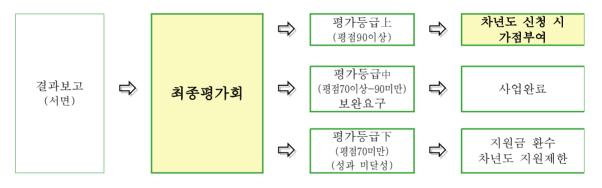
- 주관기관은 해외진출 사업 계속 추진
- 관리기관 주관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지속 지원 및 모니터링
- \* 사업완료 후 3년까지 진행사항 모니터링
- \* 반기별 지원사업 추진 상황 보고서 제출 (진흥원 서식 준수)
- \* 미준수시 당해연도 및 차년도 지원사업 지원 불가
- ※ 상기일정은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
# □ 사업수행 평가

#### ○ 중간평가

-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보고양식(중간실적보고서 등)을 제출하고, 평가위원회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(프로젝트)의 "계속"진행 또는 사업"중단"을 결정함
- 평가위원회는 보고양식(중간실적보고서 등)을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을 하며, 평가결과가 "계속"진행이 경우 조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 진행 또는 사업"중단"인 경우 사업비 환수
  - ※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
- 90점 이상("상"), 90점 미만~70점 이상("중")은 **"계속"**으로 평가하며, 70점 미만("하")은 **"중단"**으로 평가
  - ※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사업비 조정을 할 수 있음

### ○ 결과 평가(지원사업 완료)



- 사업 완료시, 제출 받은 최종추진실적(결과)보고서를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"상", "중", "하"로 평가됨
- 90점 이상("상")은 차년도 신청시 가점부여, 90점 미만~70점 이상 ("중")은 사업완료(완수)로 평가하며, 70점 미만("하")은 지원금 환수 (전액 또는 일부) 및 차년도 지원제한 조치
  - ※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, 평가위원회는 지원금 환수 등 추가 제재조치 할 수 있음

# 붙임 2

# 사업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기준

### □ 신청 자격

- 의료기관, 연관산업(기업) 및 관련협회 등
  - 의료기관 요건
  - ·「의료법」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(단, 조산원 제외)
  - ·「의료법」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
  - · 「의료법」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
  - · 해외에서 현지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 (단, 법인의 대표자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한국에 모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)
  - 연관산업(기업) 요건
  - ·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컨소시움 관련 사업추진이 가능한 회사
  - ·금융, 건설(설계·시공·CM 등), 제약, 의료기기, IT 솔루션, 컨설팅(회계법인, 법무법인) 등
  - · 또는 K-medi Package\* 형태의 사업진행이 가능한 연관산업체 및 컨소시엄 단체(가산점 부여)
    - \*K-medi Package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의료 서비스(의료기술, IT헬스, 건강보험시스템, R&D), 의료제조(의약품, 의료기기) 및 연관산업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패키지화 하여 병원진출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또는 그에 준하는 국제교역까지 포함
  - 관련 협회 요건
  - ·국내에서 정식 인가 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협회

[신청시 유의사항] 의료기관이 아닌 연관기관이 사업(프로젝트)의 총 사업 책임자일 경우에는, 신청 컨소시엄 내에 반드시 의료기관이 포함되어야 함

### □ 신청 제외대상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
  -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
  - 최근 2년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**사업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관**\*
    - \* 미진한 사업결과(최종결과보고)로 인해 지원금액을 전액 또는 부분 환수 조치받은 기관 및 해당 지원사업 중도포기로 인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한 기관
  - 불성실 납세 기관(총 사업 책임자(기관)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제출)

[신청시 유의사항] 환수조치 대상기관은 컨소시엄(참여기관)으로도 참여불가

# 붙임 3

### 수행기관 선정 세부절차

### □ 선정 절차

공고  $\rightarrow$  사업계획서 접수  $\rightarrow$  서류심사(적격후보 선정, 평점 70점 이상)  $\rightarrow$  발표평가  $\rightarrow$  선정(평가점수 우수기관(예산한도 內))  $\rightarrow$  지원내용 협의  $\rightarrow$  협약 체결

- ※ 사업계획서 발표(presentation)평가를 통해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)을 선정한 후,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"협의"과정을 거치며, 협의결과에 따라 재선정할 수 있음
  - ※ 신청자료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최종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

#### □ 선정 평가

-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'전문가 자문단'을 통해 자문·평가를 받게 되며,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 심사·평가 진행
-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
  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
- 서류심사 : 제출서류 검토·심사를 통해 적격후보를 선정하여 발표심사 일정 개별 통보
- 발표평가항목: 사업의 적합성(20점), 사업추진 가능성 및 파급효과 (25점), 사업수행체계 구성(15점), 신청기관(기업)현황(10점), 재정현황 및 재원확보 가능성(15점), 신청 예산의 적정성(15점) 및 가산점
  - 점수계산 : 평가항목별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·평균하여 산출하고 총 평가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※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
  - 동점 시 처리방침
    - ·평가 중요도가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

- ※ 평가항목 중요도 순위: 1. 사업추진 가능성 및 파급효과 2. 사업의 적합성 3. 사업수행체계 구성 4. 재정현황 및 재원확보 가능성 5. 신청 예산의 적정성 6. 신청 기관(기업) 현황
- 평가 권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어 있으며,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워칙으로 함
- 가산점 부여 기준
  - 2014년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결과평가등급이 "상"인 기관 또는 K-Medi Package 형태의 연관산업체 및 컨소시엄 단체 (최대 5점)
  - 중소병원 또는 지방소재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청기관 중 지방에 소재 하거나 중소 규모의 의료기관 (최대 10점)
  - 의료기관 해외진출 미개척 국가\* 진출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미개척 국가 진출 사업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(최대 5점)
    - \* 기 진출 국가 : 중국(홍콩·마카오 포함), 미국, 러시아·CIS, UAE, 사우디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싱가포르, 태국, 필리핀, 인도, 캐나다, 일본, 대만

#### ○ 선정평가 배점표

평 가 항 목		
사업의 적합성	<ul> <li>사업규모의 적정성(현지 시장의 적합성 포함)</li> <li>사업 추진 의지</li> <li>사업 목표의 타당성</li> <li>국내/현지 네트워크 구성 현황 수준</li> <li>* 현지 파트너 추진능력(정부주도, 국영기업, 신뢰도) 포함</li> </ul>	20점
사업추진 가능성 및 파급효과	<ul> <li>사업진출에 대한 구체화 정도</li> <li>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추진 전략 구체성/적합성</li> <li>제시한(수익예측) 사업 모델의 진출(성공) 가능성</li> <li>제약요인 최소화 방안</li> <li>사업 기대 및 파급효과</li> </ul>	25점
사업수행체계 구성	· 참여인력 및 업무 구성계획 · 전문성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·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의 적절성(컨소시엄 해당)	15점
신청 기관 (기업) 현황	· 최근 3년간 유사 국내외 프로젝트 추진 실적 · 해당 사업의 자체평가 결과의 대외 공개 정도(발표심사 시)	10점
재정현황 및 재원확보 가능성	<ul> <li>재무상태 및 사업지원 의지</li> <li>총 사업비 구성</li> <li>* (단독지원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출자구성의 우수성)</li> <li>재원조달 계획의 적합성 및 프로젝트 자금 확보 가능여부</li> </ul>	15점

평 가 항 목		
신청 예산의 적정성	· 신청 사업비 지출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적정성	15점
31 / T	· `14년도 프로젝트지원사업 결과평가의 평가등급이 "상"인 기관 · K-medi Package 형태의 연관산업체 및 컨소시엄 단체	(최대 5점)
<b>가 산 점</b> (3개 항목 점수 합산, 최대 10점 상한)	· 중소병원 또는 지방소재 의료기관	(최대 10점)
331.000	· 의료기관 해외진출 미개척 국가 진출 프로젝트	(최대 5점)
합 계		

### □ 선정발표

- 최종평가결과 발표 : 발표(대면)심사 후 14일 이내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및 진흥원 홈페이지(www.khidi.or.kr) 게재
  - ※ 탈락기관 별도 통보 없음

### □ 선정 제외대상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사업지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
  -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탈락한 사업으로 사업제안서의 보완(사업계획, 추가 사업진행 실적 등) 없이 다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 - 금년도 1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이 1차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 되는 세부사업으로 다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 - 신청자료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기간 내에 자료제출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

### □ 협약체결

지원사업비(간접보조사업비) 동의 → 사업계획서수정 및 보완 → 검토 및 확정 → 협약체결

- 사업수행기관이 선정 후, 세부 제반사항을 협의 완료 후 협약 체결
- 협약 체결 전, 사업내용·이행방법·일정 등 세부내용은 상호 조정 가능

# 붙임 4 세부지원 내용

# □ 지원내용

-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각 단계별 소요되는 사업추진 소요비용
  - ※ 해외진출 단계 예): 사전F/S ⇒ 사업계획 수립 ⇒ 심화F/S ⇒ 현지법인 및 병원설립·설계·건축 인허가 ⇒ 인력채용·교육 ⇒ 확장·이전 등
- 소요비용 지원내용

지원 내용	세부 지원 내역	제출서류 및 유의 사항
컨설팅 (F/S 포함)	사업타당성 조사·분석     (시장분석, 재무(경제성), 법률, 경영, 마케팅 등)      사업제안서작성(RFP, Proposal)     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	(제출서류) •위탁 수행 시 신청기관과 용역업체간의 계약서 사본 제출 •전문가 별도 위탁 시 계약서 사본 제출 •컨설팅 과업지시서 및 기관정보자료 제출
인허가 및 협상	• 인허가 수수료 • 전문가 자문료 및 현지출장 등	(제출서류) • 자문: 전문가 이력서 제출
교육훈련 (연수)	• 현지 채용인력 교육 (의료인, 비의료인)	(제출서류) •교육계획서 별도 첨부 (유의사항) •현지 채용예정인력에 한함
홍보마케팅	•현지 중요 관계자 초청 경비 지원 •현지 대상 마케팅 지원	(제출서류)  • 초청계획서 별도 첨부  • 행사계획서 별도 첨부 (유의사항)  • 사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현지 홍보활동  • 홍보마케팅 총 소요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 우선 사용 원칙(50% 이상)  • 홍보물(광고료 포함) 제작시  간접보조사업비 5% 이내 계상 인정
수용비 및	• 사무용품구입비, 수수료,	(유의사항)
임차료	도서인쇄비 등	• 간접보조사업비의 5% 범위 내 사용

※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비성 사업비 이외 자산성 및 간접비성 사업비용 불인정

# ○ 지원가능 사업비 비목

비목	세목	내역	사용범위	
인건비	전문계약직 보수	• 전문인력 고용 보수	간접보조사업비의 30% 까지 인정 ※ 신규채용인력만 인정되며,	
	일용임금	•임시 고용 보수 (최저임금 준수)	타기관 중복 소속자 불인정 ※ 전문계약직의 경우, 4대 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함	
운영비	일반수용비	사무용품구입비      인쇄비 및 유인비      간행물 등 구입비  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   기타경비	기타 제반경비는 간접보조사업비의 5% 범위 내 사용 ※ 재료비·자산성 내역 불인정	
		•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•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(자문료) • 공고료 및 광고료	안내·홍보물 및 광고(공고)료는 간접보조사업비의 5% 까지 인정	
	임차료	• 임차료	단기성 5일 이내 사용 인정	
	기타 운영비	• 강사료 등	지원기관 및 컨소시엄 소속 강사의 강사료 불인정	
άн	국내여비	•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	간접보조사업비의 30% 까지	
	국외여비	• 항공료, 숙박비, 식비 등	인정	
업무추진비	사업추진비	• 외빈초청경비(여비), 회의비 등	업무추진비 소요 비용에서 자 기부담금 우선 사용 원칙 (50%이상)	
위탁사업비	위탁용역비	• 용역비	간접보조사업비의 70% 까지 인정 ※ 자산성 내역 불인정 (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등)	

<sup>※</sup> 세부 사업비 산출은 [첨부1. 간접보조사업비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]으로 작성할 것

# □ 기타 지원내용(선정기관)

- 지원사업 후속지원 내용
  -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등 사업추진 G2G활동 지원
  - 사업추진을 통해 검증된 우수프로젝트는 금융지원 연계 가능
  -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지원 및 수출계약(식) 지원 등